
'22년('21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목 차

I . 사회서비스원 개요	1
II . 2022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 개요	3
III . 추진사항	
평가대상 및 체계	6
평가지표	7
평가절차	8
추진경과	9
IV . 지표별 평가결과	
1. 주요결과	10
V . 평가점수 및 등급	13

I

사회서비스원 개요

□ 추진배경

- 고령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아동·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됨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되며, 지역 내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 강화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함
 - 지역·시설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형

평성을 제고함

-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임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조성함
-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요사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지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I 2022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 개요

□ 일반사항

-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2022년 3월에 시행된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함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평가 등의 절차·방법 기준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정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공지함
- 평가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함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방향

1. 경영평가

-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의 균형적 평가를 추진함
 - 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관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함

-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를 추진함
 -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지방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였음
- 수요자 중심의 평가 적용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개선·조정, 평가위원의 과도한 요구를 지양함
 - 사회서비스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경영 지원하고자 함
 - 기관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보고서 제공과 부진기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업무성과평가

- 기관장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제출자료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상 명시된 자료*로 한정
 - *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 평가중복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진행함

III 추진사항

□ 평가대상 및 체계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와 광역도로 평가군을 구분함
 - 시(市)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사회서비스원
 - 도(道)부: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사회서비스원

구분	경영평가	업무성과평가
시(市)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道)부	경기, 강원, 충남, 경남	-

- 평가제외
 - (경영평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영평가 미실시함('21년 개원 지역)
 - * 전남(6월), 전북(12월), 울산(12월), 제주(12월)
 - (업무성과평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 ① '22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②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라도 원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업무성과평가 시 원장이 공석인 경우 등 제외함
 - * 서울,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평가체계
 -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위탁 수행하고,
 - 사회복지 및 공공부문 평가 전문가로 「사회서비스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

□ 평가지표

- (구성) 3개 분야 5개 영역 + 우수사례(가점)
- (지속가능경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 기관장의 리더십과 전략경영, 조직·인사 관리 및 재무관리
- (경영성과) 주요사업 성과, 정책성과 등 경영 활동 성과의 적절성
 - 긴급돌봄, 소속시설 운영, 공공지원 운영, 민간지원, 서비스 질*, 일자리 질, 서비스 공공성 등
 - *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포함
- (사회적 가치) 소통 및 참여, 윤리 및 인권경영 등 사회적 책임 노력의 적정성
 -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 (우수사례) 타 사회서비스원과 차별화되는 노력과 그 성과
 -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가점 부여

< '22년('21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지표 체계 >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속가능경영 (30)	리더십(18)	1. 기관장의 리더십 2. 전략경영
	경영시스템(12)	1. 조직·인사관리 2. 재무관리
경영성과 (50)	주요사업(20)	1. 긴급돌봄 2. 소속시설 운영 3. 공공지원 운영 4. 민간지원
	정책성과(30)	1. 서비스의 질 2. 일자리의 질 3. 서비스 공공성
사회적가치 (20)	사회적 책임(20)	1. 소통 및 참여 2. 윤리경영 3. 인권경영 4. 재난안전관리
우수사례(가점)	우수사례	우수사례

□ 평가절차

- (실적보고서 제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사회서비스원장에게 제출함
-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평가 전문가로 「사회서비스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평가영역별 회의·심의·의결 등 수행함
 - 평가교육,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정, 평가결과 심의·확정 등을 수행함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사회서비스원 평가위원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함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평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음

<평가 수행절차>



□ 추진경과

- '22년('21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 세부 일정
 - 평가설명회(2월 4주)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3월 1~2주)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4월 1주)
 - 1차 서면평가(4월) 및 1차 평가위원회(4월 4주)
 - 2차 현장평가*(5월) 및 2차 평가위원회(6월 1주)
 - *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등
 -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5~6월)
 - 3차 평가위원회 (6월 4주)
 - 이의신청 접수(7월 2주) 및 검토(7월 3주)
 - 결과 통보(7월 4주)

<'22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 추진내역>



IV

지표별 평가결과

□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경영전략 수립 노력이 확인됨. 하지만 기관의 핵심적 역할 및 현안 도출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음. 평가 기간 중 기관장 변경 및 공석 등으로 인해 리더십을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도 다수 있다는 점은 아쉬웠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하지만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포함한 경영환경 분석, 중기-장기 운영 목표와의 구체적인 연계는 미흡하였음

○ 경영시스템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시스템의 성과는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시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 조직·인사관리, 재무·예산관리의 적절성 측면에서 질적인 시스템 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채용 비리방지,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작동하고 있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단에 근거한 조직관리,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등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은 낮게 평가됨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라 충실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위한 추

가적인 노력은 발견하기 어려웠음

□ 경영성과

○ 주요사업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음

- 서비스 제공 요청 후 1주 이내 제공 비율 90% 이상: 100% 달성
- 요청한 서비스 시간의 2/3 이상 충족된 대상자 비율 90% 이상: 90% 달성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점 이상: 100% 달성

- 소속시설 설립 및 운영 목표 달성도는 시·도정 상황에 따라 (예. 위·수탁 계획이 연기되는 사유 발생) 기관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공공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추진실적은 전체 기관이 90% 이상의 달성도를 보임
- 민간지원은 전체 기관이 목표의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민간기관과의 모니터링, 의사소통 체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책성과

- 전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만족도는 89.10점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개선도는 평가할 수 없지만, 당해연도 서비스 품질을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100% 하고 있었음. 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 79%로 나타났으며, 최대 100%부터 최소 38%까지 지역의 여건에 따른 차이가 상당했음
-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 고난이도 서비스 제공자의 수나 비율은 적은 편이었음. 하지만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곤

란한 이용자 혹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이용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확인됨

□ 사회적가치

○ 사회적책임

- 윤리,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가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평가연도에는 본부부터 기본 운영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소속시설을 포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외부 관계자와 소통한 결과와 의견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이해관계자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성과는 있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도 다수 있었음

V

평가점수 및 등급

1 평가등급 부여 기준

- (종합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S,A,B,C,D)부여

등급	수준 정의	점수기준
탁월 (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95점 이상
우수 (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85점 이상
양호 (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75점 이상
보통 (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65점 이상
미흡 (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65점 미만

※ 기관 운영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결과에 있어 S(탁월), A(우수) 평가등급 미부여

예. 성인지 관련 사건/사고, 직원/입소자간 폭행 등 관리책임, 학대, 인권침해 등

- (영역별 평가결과) 편람기준에 따라 분과별 평가위원 점수 부여

- 지표별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
- 비계량 지표의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가점수 산출
- 영역별 100점 환산 시 달성점수(95점 이상, 85점 이상, 75점 이상, 65점 이상, 65점 미만)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S~D)하여 제시
- 우수사례는 분과별 평균 득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2 종합 평가결과

-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6.54점이며, 시(市)부의 평균 점수는 87.15점, 도(道)부의 평균 점수는 85.62점으로 나타남

구분	기관	지속가능경영(30)		업무성과(50)		사회적가치(20)	우수 사례 (가점)	합계
		리더십 (18)	경영시스템 (12)	주요사업 (20)	정책성과 (30)	사회적책임 (20)		
시(市)	서울	12.34	9.24	18.43	29.19	17.00	4.16	90.36
	대구	17.67	10.68	16.51	23.58	18.33	2.66	89.43
	인천	17.00	10.83	17.17	28.68	14.49	4.98	93.15
	광주	16.67	8.35	18.66	22.83	17.67	3.16	87.34
	대전	14.67	9.29	15.17	23.14	16.67	1.33	80.27
	세종	14.67	9.00	15.67	24.09	16.49	2.42	82.34
도(道)	경기	16.01	11.11	18.00	27.14	18.83	6.96	98.05
	강원	14.67	8.21	16.16	23.95	15.83	5.55	84.37
	충남	14.00	7.53	14.33	22.69	12.84	2.50	73.89
	경남	17.00	7.85	18.17	26.24	13.66	3.24	86.16

- 종합평가 결과, 시(市)부 A등급 4개소, B등급 2개소, 도(道)부 S등급 1개소, A등급 1개소, B등급 1개소, C등급 1개소 부여함

구분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85점 이상	[B등급] 75점 이상	[C등급] 65점 이상
지역	경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대전, 세종, 강원	충남

* S등급(95점 이상), A등급(85점 이상), B등급(75점 이상), C등급(65점 이상), D등급(65점 미만)으로 종합점수 절대평가

** 종합평가결과 D등급 없음

3 영역별 평가결과

구분	기관	지속가능경영(30)				업무성과(50)				사회적가치(20)	
		리더십(18)		경영시스템(12)		주요사업(20)		정책성과(30)		사회적책임(20)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시 (市)	서울	12.34	C	9.24	B	18.43	A	29.19	S	17.00	A
	대구	17.67	S	10.68	A	16.51	B	23.58	B	18.33	A
	인천	17.00	A	10.83	A	17.17	A	28.68	S	14.49	C
	광주	16.67	A	8.35	C	18.66	A	22.83	B	17.67	A
	대전	14.67	B	9.29	B	15.17	B	23.14	B	16.67	B
	세종	14.67	B	9.00	B	15.67	B	24.09	B	16.49	B
도 (道)	경기	16.01	A	11.11	A	18.00	A	27.14	A	18.83	A
	강원	14.67	B	8.21	C	16.16	B	23.95	B	15.83	B
	충남	14.00	B	7.53	D	14.33	C	22.69	B	12.84	D
	경남	17.00	A	7.85	C	18.17	A	26.24	A	13.66	C

- 리더십 분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18점 만점에 15.47점이며, S 등급 1개, A등급 4개, B등급 4개, C등급 1개로 나타남
- 경영시스템 분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12점 만점에 9.21점이며, A등급 3개, B등급 3개, C등급 3개, D등급 1개로 나타남
- 주요사업 분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6.83점이며, A등급 5개, B등급 4개, C등급 1개로 나타남
- 정책성과 분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5.15점이며, S등급 2개, A등급 2개, B등급 6개로 나타남
- 사회적가치 분야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6.18점이며, A등급 4개, B등급 3개, C등급 2개, D등급 1개로 나타남

4 기관장 업무성과평가 결과

○ 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가중치 조정·활용하여 기관장 업무성과평가 결과 도출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업무성과평가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항목
지속 가능 경영	리더십 (18)	기관장의 리더십	15	책임경영 (70%)	리더십 (30%)
		전략 경영	15		
	경영 시스템 (12)	조직·인사관리	10		경영시스템 (20%)
		재무관리	10		
사회적가치	사회적 책임 (20)	소통 및 참여	20		사회적 책임 (20%)
		윤리 경영			
		인권 경영			
		재난 안전관리			
경영 성과	주요사업 (20)	주요사업	15	경영성과 (30%)	경영성과 (30%)
	정책성과 (30)	정책성과	15		

○ 업무성과평가 결과

기관	책임경영 (70)					경영성과 (30)		합계	종합 등급
	리더십 (30)		경영시스템 (20)		사회적 책임 (20)	주요 사업 (15)	정책 성과 (15)		
	기관장 (15)	전략 경영 (15)	조직 인사 (10)	재무 관리 (10)					
대구	14.45	15.00	9.12	10.42	18.33	12.38	11.79	91.49	A
인천	15.00	13.33	8.57	11.38	14.49	12.88	14.34	89.99	A
광주	14.45	13.33	6.33	9.10	17.67	14.00	11.42	86.30	A
대전	12.23	12.22	7.60	9.46	16.67	11.38	11.57	81.13	B

- 평가제외: ①22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②경영평가 대상 기관이라도 원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평가 시점 원장 공석인 경우